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40876 판결 [공사대금 반환청구]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2. 15.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소225782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3. 4.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주차타워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같은 해 3. 27. 600만 원을, 같은 해 4. 8. 3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중단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새로이 공사를 해야 할 정도로 부실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여서, 원고는 보완 공사비용으로 합계 458만 원(주차타워 기초보강공사 150만 원 + 바닥 콘크리트 공사 308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토목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공사도면을 제작함이 없이 원고가 선정한 기계식 주차타워 설치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설치도면을 활용한 것으로 보일 뿐, 토목공사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 보이는 점, 원고는 먼저 피고가 시공한 토목공사 부분은 지하 깊이로 시공하여 지상과 평평하게 맞추어야 함에도 약 30cm 가량 지상으로 튀어 나오게 공사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애초에 지상과 평평하게 맞추도록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150~200mm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350~400mm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함으로써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안전성에 관한 그 주장과 다르게 별다른 추가보강공사 없이 기계식 주차타워를 설치하였고, 위 주차타워는 현재까지 이상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만큼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광현, 판사 최호식, 판사 이정형